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31.

강훈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8.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 (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1. 25.)

상정, 의결(수정가결)

－ 제9차 정무위원회 (2024.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훈식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게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 병 권)

□ 현행법 제53조제4항¹⁾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의 금지규정과 이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융당국으로서는 고발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임.

□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 행정제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임직원을 신속히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²⁾ 및 「상호저축은행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감독)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임직원에게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이하 생략)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3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1]

2.라.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3)에서 각각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 근거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종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 협회 임직원까지 포함⁴⁾하고 있는데, 동 협회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금융업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 성격이 다르며, 유사한 금융투자협회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도한 면이 있음.

3.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3)「상호저축은행법」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별표 1]

60. 제37조의5를 위반하여 횡령, 배임, 중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한 경우

4)「여신전문금융업법」제53조(감독)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투자협회와 달리 기부금관리재단을 소유⁵⁾하고 있고,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한편,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함.

○ 첫째, 개정안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횡령·배임’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 수뢰와 달리 횡령과 배임에는 직접 또는 간접을 구분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또는 간접’이 증여와 수뢰만을 수식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⁶⁾

○ 둘째, 행정처분 가능 사유를 나열한 개정안 별표 37의2에서 ‘수뢰요구, 취득 또는 약속을 한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개정안 제50조의3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⁷⁾

○ 셋째,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제재 요건으로서 임직원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5)「여신전문금융업법」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6)「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는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7)유사입법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제4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으로만 주체를 규정하여 그 임직원의 행위를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행정제재 적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수정하여 의결함.

6. 수정안의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일 정무위원장

나.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 대상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행정제재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대상 등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50조의3제2항 등).

7. 찬반토론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3.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 대상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행정제재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대상 등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50조의3 제2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0조의3제1항 중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횡령, 배임, 증여”를 “횡령, 배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1.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협회”를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안 별표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7의2.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횡령, 배임, 중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은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 ----- ----- 횡령, 배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중여----- ----- -----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1.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보조

제53조(감독)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u>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u>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 ⑥ (생략)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u>협회</u>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	제53조(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현행과 같음)	<u>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u> 제53조(감독)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u>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u>----- ----- ----- -----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u>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u>----- -----. -----
---	---	---

회사등과 부가통신 업자”는 “협회”로 본다.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준용한다.

1.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협회”를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별표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뇌

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u> <u>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u> <u>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u> <u>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중여,</u> <u>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u> <u>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u> <u>와 관련하여 제6장 여신전문금</u> <u>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u> <u>준용한다.</u> 1. <u>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u> <u>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u> <u>에 관한 업무</u> 2. 「<u>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u> <u>수행하는 업무</u>
제53조(감독)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u>여신전문금융</u> <u>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u> <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u>	제53조(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여신전문금융</u> <u>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그 소</u> <u>속 임직원을 포함한다)</u>----- ----- -----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 ⑥ (생략)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u>협회</u>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u>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u>----- ----- ----- -----.
---	---